**비즈니스환경 최적화조례**

(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1. **[입법목적]**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며 안정적이고 공평•투명하며 예측가능한 비즈니스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의 혁신창업 에너지를 방출시키며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2. **[개념 정의]** 이 조례에서 비즈니스환경이라 함은 기업 및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조직•개인(이하 ‘시장주체로 통칭’)의 시장접근, 생산경영, 시장퇴출 등 과정과 연관된 외적 요소와 요건을 지칭한다.
3. **[기본원칙]**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 유형 시장주체의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고수하여야 한다. 공개성•투명성, 감독관리의 공평성•공정성, 서비스의 편리성•효율성, 법에 의거하여 각 유형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개방적이고 경쟁질서가 건전한 국제 최고 수준의 현대화 시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유형 시장주체의 투자•흥업(興業)을 위하여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관리 직책]**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비즈니스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관련 개혁을 통일적으로 계획•추진하고 지도•조율하며 실행을 독촉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결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 업종 및 영역의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1. **[개혁 격려]** 국가는 각 지역, 각 부서가 실제와 결부시켜 법에 의거하여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개혁 조치의 혁신을 모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유관조직•개인이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오류•실수를 범하거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국가에서 확정한 개혁 방향과 일치하며 의사결정 및 실시절차가 규정에 부합하고 근면함과 책임을 다하였으며 사리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의 유관부서는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정책•조치에 대한 홍보와 해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적시에 대표적인 경험을 정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1. **[사회의 참여와 여론의 감독]**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비즈니스환경 조성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비즈니스환경에 대한 언론매체의 여론감독을 지지한다. 언론매체와 언론매체 종사자는 시장주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진실적•전면적•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편집•발표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부정당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의 유관부서는 여론 수집 및 응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즈니스환경 파괴 행위를 적시에 조사처리하고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비즈니스환경 평가]** 각 지역, 각 부서가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추동력을 부여하고 각 지역 사이에 비즈니스환경 최적화에 관한 선의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한 비즈니스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비즈니스환경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의 유관부서는 전국 비즈니스환경 평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개입하거나 허위조작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국가기관의 명의를 모용하여 비즈니스환경 평가를 전개하거나 비즈니스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허위조작 행위를 행하거나 부정당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시장주체**

**제1절 각 유형 시장주체에 대한 평등한 대우**

1. **[시장접근]**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접근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접근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업종•영역•비즈니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2. **[생산요소 획득상의 평등]** 국가는 각 유형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인력자원,•자금•토지사용권 및 자연자원 등 생산요소를 획득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정부자금 투입 방향, 토지 공급, 조세 혜택, 비용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함(職稱) 평정 등 면에서 소유제 유형 및 지역을 불문하고 각 시장주체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찰 및 정부조달]** 입찰 및 정부조달은 공개적•투명적이고 공평•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유제 유형 및 지역을 불문하고 각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제한하거나 배제시켜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입찰 및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정정하고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공공자원 거래의 전자화를 가속화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전자화 거래를 실행 중인 경우 원칙상 시장주체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은 법에 의거하여 거래목록 및 거래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각 유형 시장주체가 적시에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 보호**

1. **[자주적 경영권 보호]**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자주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할 권리를 보호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권 보호]** 국가는 소유제 유형을 불문하고 법에 의거하여 모든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시장주체가 일반적인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신중한 행정강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

유관부서는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과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구조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지적재산권 신속심사, 신속확인, 신속구제 매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하며 소형박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권리구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중소액 투자자 보호]** 국가는 회사지배의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법에 의거하여 주주권 특히 중소액 주주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주주가 법에 의거항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의 투자 의욕을 증진시킨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각급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함으로써 중소액 주주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2. **[대(對)기업 대금 체불 채무 정리]** 행정기관•비즈니스기관 및 시장 우위적 지위에 있는 기업은 약정을 어기고 중소기업에 대한 화물•공사•서비스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소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한 당사자에게 체불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분쟁해결 매커니즘 보완]**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인민조정, 중재 등 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법률구조 및 법률구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조정, 행정재심사, 중재, 소송이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조율하는 시장주체간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계약이행 거부 행위로 판정된 행위는 관련 시장주체의 신용기록에 반영한다.

**제3장 시장 환경**

**제1절 생산경영의 편리성**

1. **[기업 창설]** 국가는 통합적인 시장주체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주체 등기의 형식적 심사 기준을 규범화하고 허위등기 책임 추궁 제도를 보완하며 등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기관의 자유재량권을 축소 및 규율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주체를 설립하고 일반적인 경영조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처리사항을 간소화하고 처리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전국 통합 신분인증 시스템 및 전자 영업집조 시스템에 의탁하여 1회 인증(一次認證)으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全網通辦)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주체가 복수의 지역 및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서 등록 검증을 중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 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전제조건을 규범화하고 투자 관련 규획, 산업정책, 프로젝트 심사비준•허가 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추진업체를 위하여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허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는 비안(備案)제를 시행한다.
2. **[건설 프로젝트 심시비준]**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전국 통합적 기준에 따라 본급(本級) 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사항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비준 사항의 명칭, 적용범위, 전제조건, 구비서류 및 심사비준 기한을 명확히 하고 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개발단지, 공업단지, 신산업단지와 조건을 구비한 기타 지역에서 지역 평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적인 조직하에 법정(法定) 평가사항에 대하여 지역별로 통일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토지 출양(出讓) 또는 획발(劃拔) 전에 관련 건설 요구사항을 건설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미 지역 평가를 실시 중인 경우 유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시 시장주체에게 관련 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거나 평가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특별 검수 사항에 대한 연합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수도면 및 검수 기준을 통합하고 통일적으로 검수의견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재산 등기]** 국가는 통합적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부동산 등기절차를 통합•최적화하고 부서간 협력 및 정보 호연호통(互聯互通)을 강화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적인 동산•권리담보 등기 제도와 동산저당등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자동차 등 동산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활용한 담보융자의 편리성을 확대한다.

1. **[국제무역]** 유관부서는 전자세관 플랫폼에 의탁하여 정보 공유와 업무 협동을 추진하고 세관 및 국제무역 분야의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국제무역 ‘단일 창구’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주체를 위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통관 절차와 개항장 운영 서비스의 작업 시간을 제정 및 공개하여야 하며 개항장의 요금 리스트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인정기업에게 해당 편리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상의 근거가 없는 한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수출입 단계의 감독관리 증명문서를 창설하고 통관 단계에서 해당 증명문서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산 처리]**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유관 인민법원과 파산업무 통일적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파산 절차 관련 업무의 조율과 정보 공유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기업 변경 및 말소]**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기업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며 처리원가를 낮춰야 한다. 설립 이후 경영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등 소정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간이말소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절 제세공과금 납부수속 규범화**

1. **[세금 납부]**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세무신고 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 및 납세 횟수를 줄이며 납세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점진적으로 전체 세무신고 절차의 온라인 처리를 시행하고 전자영수증의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료]** 국가는 종업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 및 펀드 수입•지출 상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사회보험료 정책을 통합하고 규범화한다.
3. **[기업 관련 비용 규범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 산업협회•상회는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집행하는 기업 관련 행정비즈니스성 비용, 정부성 기금, 행정심사비준 중개 수수료 및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운영 서비스 요금 목록 •리스트를 대외에 공시하여야 한다.행정기관, 비즈니스기관, 사회조직, 기업 등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리스트에 수록된 요금 항목을 제외한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조직도 법정(法定)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비즈니스성 비용 항목을 증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행정관리 직능을 유상 운영 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관련 관리 활동을 비즈니스기관, 사회조직 또는 기타 조직에 위탁함에 있어 정부 서비스 조달 등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유상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하여야 하며 업계 관리와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주체의 성실경영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정부지도가격을 적용하는 유상 서비스 항목은 그 서비스 원가를 엄격히 책정하여 서비스 기준과 가격을 확정하여야 하며 비용을 수취하는 주체가 엄격히 집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비용을 수취하는 주체는 사사로이 기업 관련 행정비즈니스성 비용, 정부성 기금,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정부지도가격을 적용하는 운영 서비스 요금의 기준을 인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용 수취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업에게 협찬•기증, 신문•정기간행물 구독, 교육훈련 참가, 사회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개서비스기구가 행정자원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기준도달업체 평정 및 표창 행사 참가를 시장주체에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준도달업체 평정 및 표창 행사를 이용하여 시장주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공공비즈니스, 융자 및 인재 서비스**

1. **[공공비즈니스 서비스]** 수도 공급, 전력 공급, 열 공급, 가스 공급, 배수 및 오수처리, 통신, 우정(郵政) 등 공공비즈니스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 기준, 서비스 절차, 처리기한, 요금 기준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장주체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등 공공비즈니스을 운영하는 기업은 설치신청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설치신청 자료를 간소화며 처리기한을 단축하여야 한다. 수도•전기•가스 연결•사용 원가를 줄이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전기 소매상의 불합리적인 가격할증, 요금 부가 등 행위를 단속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이동인터넷을 응용하여 온라인 자문, 설치신청, 조회, 요금 납부, 수리 신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관 행정기관은 수도•전기•가스 연결 관련 행정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시키며 수도 공급,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등 공공비즈니스 운영기업의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설치 신청 단계의 중개서비스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1. **[융자 서비스]** 국가는 금융기구의 민영기업•소형박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국가는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직접융자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주식발행 및 재융자 제도를 보완하며 민영기업의 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금융기구의 민영기업 사채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격려한다.

금융관리부서는 금융기구의 민영기업•소형박리기업 지원 비즈니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는 동등한 신청조건하에서 시장주체의 소유제 유형을 불문하고 각 시장주체에 대하여 동일한 대출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며 소유제별로 시장주체의 대출심사비준 규정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금융기구는 수수료 수취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시장주체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혁신창업 격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혁신을 존중•보호•격려하고 시장주체의 혁신창업 활동을 지원하며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며 창업보육 및 과학기술 성과 이전•상용화 서비스 플랫폼의 발전을 격려하고 혁신창업 원가를 낮춰야 한다.
2. **[인재 서비스]** 국가는 통일적•규범적이고 경쟁질서가 양호한 인력자원 시장을 구축 및 완비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업종과 업종 간의 경계를 타파하고 신분•성별상의 차별을 철폐하며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을 유도하고 촉진시킨다.

국가는 외국인 재중취업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며 신청 기준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경제 법칙 및 인재성장 법칙을 존중하고 각 유형 시장주체의 인재 양성•도입•사용•평가•장려 등 면에서의 자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산업협회•상회 규율]**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산업협회•상회에 가입하고 탈퇴할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시장주체에게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협회•상회는 이미 철폐된 자격•자질 인증을 변칙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 증명서•보고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방해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시켜서는 아니되며 시장주체를 조직하여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 직능 대행 또는 행정자원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비용 항목을 증설하거나 비용 기준을 인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정부서비스**

**제1절 온•오프라인 서비스의 융합**

1. **[정부 서비스 홀]** 통합 정부 서비스 홀을 이미 개설한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제반 정부 서비스 사항을 본급(本級) 통합 정부 서비스 홀로 집중시켜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앙에서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본 부서가 실시하는 정부 서비스 사항을 소재지의 통합 정부 서비스 홀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부 서비스 홀은 ‘전방에서 통합적으로 접수하고 후방에서 분류 및 심사비준하여 통합창구에서 인허가 문건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단일 창구에서 접수하고 후방에서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정부 서비스 홀 및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업무 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서비스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다양한 경로의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급 정부 서비스 홀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서 중복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부 서비스 플랫폼]** 국가는 국가정부서비스플랫폼을 총 중추로 하고 국무원 유관부서의 정부 서비스 플랫폼과 각 지역의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국통합온라인정부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전국통합온라인정부서비스플랫폼에 의탁하여 제반 온라인 정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網通辦)’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가기밀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서비스 사항은 전국통합온라인정부서비스플랫폼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정부서비스플랫폼은 시장주체와 대중을 향한 모바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과 부서가 이동인터넷을 응용하여 시장주체를 위하여 보다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1. **[정부 서비스 데이터의 공유와 교환]**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다단계 상호연결식 정부 서비스 데이터 공유•교환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의 유형, 기준, 범위, 절차를 통일적으로 명확화하고 등급간•지역간•시스템간•부서간•업무간 데이터 정보의 신뢰가능한 교환과 안전한 공유를 실현하며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사회를 향해 개방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전국통합온라인정부서비스플랫폼을 통하여 시장주체의 정보를 조회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플랫폼에 이미 수록된 정보의 중복적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도장 및 전자허가증]** 국가는 권위적•규범적이고 신뢰가능한 통합적 전자도장 시스템을 국축한다. 국무원의 유관부서, 지방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 통합적 전자도장 시스템에서 제작 및 발급받은 전자도장을 사용한다. 전자도장과 실물 도장은 그 법적 효력이 동등하다.

국가는 전자영업집조 등 전자허가증•전자증서•전자증명의 사용을 보급하고 전자허가증•전자증서•전자증명의 부서간•지역간 상호 인정 및 공유를 추진한다. 전자허가증•전자증서•전자증명은 종이 형태의 허가증•증서•증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시장주체의 관련 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증빙이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허가증•전자증서•전자증명, 전자도장을 날인하였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뢰가능한 전자서명을 사용한 전자문서는 정부 서비스 사항의 처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정부 서비스 수준 제고**

1. **[정부 서비스 사항의 표준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행정 서비스 사항 표준화를 추진하고 시장주체를 위하여 규범적•투명적•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의 근거 없이 처리 조건과 절차를 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허가 및 비안(備案)의 규범화]** 법에 의거하여 설정된 행정허가 사항은 리스트 관리제를 시행하여 사항별로 명칭, 설정근거, 실시기관, 실시범위, 허가조건, 신청서류, 허가절차, 처리기한, 허가의 유효기간, 비용 등을 명확히 하고 리스트를 동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어떠한 행정기관도 불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안(備案), 목록, 계획, 규획, 등기, 등록, 연도검사, 연간보고, 감제(監制), 인정, 인증, 심사결정 등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변칙적으로 설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규장의 근거가 없거나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부간 정보 공유, 행정기관의 주동적 수집 등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행정기관은 시장주체를 대상으로 비안(備案) 사항을 설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정허가권 상대적 집중 개혁]**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25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심사비준 및 감독관리의 직책•업무분장을 명확히 한 후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성(省)급 인민정부가 비준한 방안에 따라 일부 행정허가권을 한 부서로 집중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허가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원(原) 주관부서는 시장주체에게 본 부서의 공인을 추가로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상급 인민정부 유관부서의 업무 지도를 받아야 하며 본 기관의 명의로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심사비준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행정기관과의 연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조분리(證照分離)’ • ‘다증합일(多證合一)’ 개혁]** 국가는 통일사회신용코드 제도를 시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비즈니스허가 사항에 대하여 심사비준 철폐, 심사비준의 비안(備案) 전환, 고지승낙제 시행, 시장접근 서비스 최적화 등 개혁 조치를 취하고 기업의 허가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증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최적화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와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정보수집형, 기재공시형, 관리조회형 일반 경영 항목의 기업 허가증 발급 사항과 기업등기 정보로 행정관리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 허가증 발급 사항을 통합하여 영업집조에 반영시켜야 하며 통합된 허가증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근거 없이 그 어떠한 부서도 기업 허가증 발급 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명 사항 축소와 대중의 편리 도모]**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증명 사항을 설정함에 있어 법률•법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호인정 및 공유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적 거증(擧證)을 줄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 설정을 금지한다.

1. 자연법칙과 정리(定理), 널리 알려졌거나 추정이 가능한 사실
2. 법원의 확정판결, 중재기관의 중재판정 및 공증기관의 공증문서에 의해 인정된 사실
3. 유관부서가 스스로 생산하였거나 부서간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획득, 검증이 가능한 정보
4. 신청인의 기존 증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거나 기타 서류에 의해 포괄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보류된 증명사항 리스트를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항별로 설정근거, 발행기관, 처리지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처리절차를 최적화하고 증서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절차 최적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일정 기간 내에 두개 이상의 동급(同級) 부서가 각각 별도로 실시하되 서로 연관성이 있는 행정심사비준 등 정부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한 부서가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신청서류를 각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각 관련 부서가 동시에 심사를 실시하고 각각 심사비준 결정을 내리는 병렬식 심사비준제를 시행할 수 있다.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조직도 한 심사비준 사항의 처리결과를 다른 심사비준 사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의거하여 설정된 행정허가 사항으로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를 통해 행정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정정이 가능하고 심각한 위해(危害)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없을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제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증명에 대하여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를 통해 허위승낙 행위의 정정이 가능하고 심각한 위해(危害)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은 신고승낙제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신고승낙제를 적용하는 행정허가 사항 및 증명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처리규정, 감독관리 규칙, 승낙 위반에 따르는 법률책임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고 고지승낙서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진적으로 고지승낙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서면승낙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행정허가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변경등기 관련 판결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소지하여 행정등기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신청을 사전 절차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사항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변경등기에 관한 판결내용이 들어 있고 각 당사자 사이에 이행에 관한 분쟁이 없거나 판결이 권리확인 판결 등 급부에 관한 내용이 없는 판결일 경우 등기기관은 직접적으로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심사비준 서비스의 편의화]** 행정행위의 상대자가 제출한 정부 서비스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석에서 결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서면결정을 내리고 현장 대기 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즉석에서 서면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으로 법정(法定) 접수조건에 부합되고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원칙상 1회에 한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답사, 전문기술 심사, 단체토론, 전문가 논증, 청문 등 사항은 한정된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개인을 향한 처리량이 방대한 정부 서비스 사항의 처리권한 또는 접수절차를 법에 의거하여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街道辦事處) 또는 촌민(주민)위원회에 수권 또는 위탁하여 근방에서 처리하거나 접수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기한부 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여 접수창구 또는 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에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소정의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에 처리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합리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기한을 확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의 규범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를 규범화하여야 하며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 사항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중개 서비스 사항은 행정심사비준 등 정부 서비스의 접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중개 서비스의 규범과 기준을 제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중개서비스기구가 서비스 승낙, 기한부 처리, 개업 공시, 일괄적 고지, 업무활동 기록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중개서비스기구는 처리기한, 업무절차, 신고조건, 비용기준 등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거나 관련 기구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 서류의 경우 심사비준부서는 처리지침에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 요지와 문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도록 인도(引導)하여야 한다.

1. **[중개서비스기구의 규범화]** 행정기관은 중개서비스기구와 예속 관계 또는 이익 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사비준부서에 소속된 비즈니스기관, 행정심사비준부서가 주관하는 사회조직 및 그가 설립한 기업은 시장주체를 상대로 본 부서의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유료 중개 서비스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심사비준 과정에서 기술 서비스를 제3자에게 의뢰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 방식으로 중개서비스기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변칙적으로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개서비스기구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중개서비스기기구 수에 대하여 상한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으로 중개서비스기구의 영업 활동에 지역•업종•부서의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3절 민원 처리와 감독평가**

1.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시장주체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며 법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야 한다.
2. **[민원 처리 매커니즘]**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장기적인 비즈니스환경 민원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비즈니스환경 관련 신고•제보를 적시에 처리하고 신고인•제보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제보 사항의 처리를 완료한 후 적시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제보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정부 서비스 감독]**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본급(本級) 정부 서비스 홀 및 본 기관 포털 사이트의 현저한 위치에 감독 창구 또는 감독 플랫폼을 설치하여 주동적으로 의견•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시에 반응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서비스 평가]**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대상의 평가를 유관 행정기관 및 그 내부기구의 실적평가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5장 법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

**제1절 감독관리 책임의 실행**

1. **[감독관리 직책]**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 직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시장주체에 대한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따라 예속 관계가 없는 기타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 기관은 적시에 책임을 다해 관련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협조와 관련하여 피요청 기관 상급기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응당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합 감독관리 집법(執法) 및 연합검사]** 각급 인민정부는 집법(執法) 직능 및 집법(執法)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분하여야 하며 시장 감독관리, 생태환경 보호, 농업•농촌, 교통운송, 문화시장, 도시관리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종합 감독관리 집법(執法)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집법(執法) 주체와 등급을 줄이고 집법(執法) 기구를 간소화하며 기층(基層)의 감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의 집법(執法)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유관부서가 동일 검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복수의 검사 사항이 합병 가능한 사항이거나 연합실시가 가능한 사항인 경우 사항을 합병하거나 연합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1.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 국가는 혁신 격려, 포용•신중의 원칙에 따라 신산업, 신업태, 신기술, 신모델에 대한 맞춤형 감독관리 방식 및 기준•규범을 확정한다. 법에 의거하여 혁신을 보호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 및 품질 마지노선을 고수하며 발생한 문제를 적시에 유도하고 처리한다. 또한,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혁신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절 감독관리 방식의 혁신**

1. **[‘쌍수기(雙隨機)•일공개(一公開)’ 감독관리]** 특수 중점 분야를 제외한 일상적 감독관리 분야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집법(執法)검사 수행인원을 선정•파견하며 추출검사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는 ‘쌍수기(雙隨機)•일공개(一公開)’ 감독관리 방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점적 감독관리]** 공공안전 및 대중의 생명•건강 등과 연관된 특수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의 품질안전 관리와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빈틈 없는 중점적 감독관리 방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고•제보,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감독관리 사항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중점적 감독관리 절차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3. **[신용 감독관리]** 국가는 신용에 기한 감독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행정기관은 감독관리 대상의 리스크 등급 및 신용 수준에 근거하여 차별화•분류화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출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동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신용이 양호하고 법을 준수하며 리스크가 낮은 감독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추출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적당히 줄이고 신용이 저하하고 법 위반 기록이 있으며 리스크가 높은 감독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추출검사의 비율과 빈도를 적당히 확대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공중도덕, 상도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와 사회의 정상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신용불량 주체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조직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신용불량 주체가 규정된 기한 내에 신용 훼손 행위를 시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며 규정에 따라 신용을 회복한 경우 연합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권위적•통일적이고 조회 가능한 시장주체 신용기록을 수립하며 호연호통(互聯互通)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통일된 기준과 규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신용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1. **[‘인터넷+감독관리’]** 국가는 ‘인터넷+감독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의 감독관리 사항, 설정근거, 감독관리 절차, 감독관리 결과, 감독관리 행위는 모두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며 감독관리 정보의 부서간, 지역간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모든 감독관리 사항을 망라하고 모든 감독관리 과정을 기록하며 감독관리 리스크 발견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3절 법 집행 행위의 규율**

1. **[행정법 집행 규율]** 행정기관은 행정법 집행함에 있어 명확한 사실, 확실한 증거, 완벽한 수속, 합법적 절차, 정확한 성격 정립,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전면적•적시적•주동적으로 행정법 집행주체, 인원, 직책, 권한, 근거, 절차, 권리구제 방법, 무작위 추출검사 사항 리스트 등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법 집행인원은 시장주체에 대한 행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동적으로 행정법 집행인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법 집행인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주체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행정검사가 끝난 후 서면결정 또는 결론을 검사대상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행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중대한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법제(法制)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法制)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1. **[자유재량권 규율]**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 행사는 법률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무관한 요소의 개입을 배제시키고 조치와 수단의 필요성•적당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행정법 집행 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법치 보장**

**제1절 정책의 제정과 시행**

1. **[정책의 제정]**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법규의 근거 없이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거나 시장주체의 의무를 확대하거나 시장 접근•탈퇴 조건을 설정하거나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시장주체의 이익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시장주체, 산업협회•상회 및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장 및 시장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성문건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시장접근, 산업발전, 투자유치, 입찰, 정부조달, 경영행위규범, 자격기준 등 시장주체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공평경쟁심사를 실시하여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장경쟁의 배제•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를 통해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따를 것으로 확인된 규장•규범성문건은 출범하거나 심의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규범성문건 합법성 심사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합법성 심사 지책을 담당하는 부서•기구 또는 인원이 통일적으로 규범성문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합법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에서 합법성 결여 판정이 내려진 규범성문건은 단체심의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규장•규범성문건 및 기타 정책문건 제정•발표에 관한 통일적 계획•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적 형세와 결부시켜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 출범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정책 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상호 충돌 또는 중첩으로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규•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포(公布) 이후 시장주체가 시행 관련 준비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한다.

1. **[법규•정책의 공포(公布)와 해독 자문]** 행정기관은 정부 공보, 정부 포털 사이트, 정부 서비스 홀, 정무 신매체 등 경로를 통해 본 기관이 집행하고 제정한 법률•법규•규장•규범성문건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의 포털 사이트에 의탁하여 본급 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장•규범성문건 특히 시장주체와 연관된 제반 혜택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간편하고 신속한 무료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개적인 발표가 이뤄지지 아니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은 행정관리의 근거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주체의 권리•의무와 연관된 행정법규•규장•규범성문건의 경우 행정기관은 공포(公包)와 더불어 홍보 및 해독을 병행함으로써 시장주체의 법규•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규•정책 자문 및 해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 포털 사이트, 정부 서비스 홀, 정부 서비스 플랫폼, 정부 서비스 상담전화 등을 통해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이 인터넷, 우편, 전화로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제출하는 자신의 권익과 연관된 자문 신청을 접수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1. **[정책 평가와 정리]**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규장•규범성문건 정기평가 및 정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관련 규장•규범성문건 개정 및 폐지의 중요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위반, 상호 충돌, 시장의 공평 경쟁 방해,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 정황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한 정무처리]**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시장주체에게 정책 승낙을 함에 있어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법규를 어기고 혜택적인 조건을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주체로서 민사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책임을 부담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한 정책 승낙과 체결한 계약•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부 교체, 부서 또는 인원 교체, 정책 조정 등을 이유로 약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 공공이익 또는 기타 법정(法定) 사유로 인해 정책 승낙 또는 계약•협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정(法定)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관련 시장주체의 재산손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법률책임**

1. **[정부의 책임]**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 및 공무원이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훼손하는 위약 행위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비즈니스환경이 파괴됨으로써 비즈니스재판, 행정처벌, 기율처분, 문책처리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를 정부신용훼손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부신용 훼손을 초래한 행위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 책임이 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법정(法定) 직책의 이행을 거부, 회피, 지연하는 경우
	2. 시장주체의 시장접근 또는 시장퇴출을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시장주체의 자주적인 생산경영 활동, 생산요소의 평등한 획득에 불법으로 개입하거나 시장주체의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불법으로 침해하거나 약정을 어기고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제가 상이한 시장주체 또는 타지역 시장주체가 현지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입찰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거나 타지역의 상품•서비스가 현지 시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경우
	4. 시장주체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강제로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규정을 어기고 비용 항목을 설정하거나 비용 기준을 인상하거나 비용 수취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관리 직능을 유상 운영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시장주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시장주체를 조준한 행정허가, 비안(備案), 증서, 증명 사항을 설정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정부 서비스 사항의 처리조건, 신청서류, 처리절차를 설정하거나 법정(法定) 처리절차를 위반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규정을 어기고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 사항을 설정하거나 예속 관계 또는 이익 관계가 있는 조직이 본 부서의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유료 중개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허용하거나 시장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강제적 또는 변칙적으로 중개서비스기구를 지정하거나 중개서비스기구 수에 대해 상한제를 시행하거나 불법으로 중개서비스기구의 영업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
	7. 규정을 어기고 신고•제보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제보인의 신원 정보를 누설하거나 신고인•제보인을 공격•보복하는 경우
	8. 기타 행정기관의 행정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시에 책임을 다해 협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규정을 어기고 행정법을 집행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0. 행정심사비준, 행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11. 공평경쟁심사, 합법성 심사 등 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제 배제•제한 효과가 있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규장•규범성문건 및 기타 정책문건을 출범하는 경우
	12. 시장주체에 대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위배되거나 자신의 법정(法定) 권한을 벗어난 정책 승낙을 하거나 법정(法定)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3. 시장주체와 체결한 관련 계약•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1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응당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의 경우
1. **[산업협회•상회의 책임]** 산업협회•상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활동을 중단시키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의 교체를 명할 수도 있다. 불법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를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유관부서에 의해 이미 취소된 자격•자질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허위 증명 또는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부정당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3. 법률•행정법규의 수권 없이 시장주체의 회원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4. 정부 직능 대행을 이용하거나 행정자원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비용 항목을 증설하거나 비용 기준을 인상하거나 강제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5.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 **[중개서비스기구의 책임]** 중개서비스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비용을 수취하거나 허위 증명서 또는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부정당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유관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관련 행정구역 내에서의 영업 활동을 일정 기간동안 금지한다.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영업집조를 취소하고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묻는다.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2. **[공공비즈니스 운영기업의 책임]** 공공비즈니스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비즈니스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며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법에 의거하여 공시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책임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3. **[시장주체 강제퇴출 제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편취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모용(冒用)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등기된 주소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영업집조 취소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말소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황이 비교적 엄중한 위법행위로 인해 신용이 심각하게 불량한 기업 명단에 수록되거나 간이말소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회피하는 등 법을 위반한 신용불량 시장주체, 생산허가 및 안전생산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생산허가 및 안전생산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시장주체, 중대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한 시장주체에 대하여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강제퇴출을 실시한다. 강제퇴출을 당한 시장주체는 3년 내에 관련 시장 접근을 금지하고 그 법정대표인•책임자는 3년 내에 기타 기업의 법정대표인•책임자 직을 맡을 수 없다.

**제7장 부칙**

1. **[특수 적용 상황]** 법률•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이 조례상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2. **[시행일자]** 이 조례는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